

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<h1>공 보</h1>
http://www.daedeok.go.kr

제2018-74호
2018. 10. 4.(목)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차 례

공 고(2)

-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(공고 제2018-751호)1
-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(공고 제2018-752호)5

공									
람									

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
「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
아래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4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위탁운영 대상시설

시 설 명	소 재 지	시설규모	비 고
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(본관)	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740번길 80(읍내동)	대지면적 1,341㎡ 연 면 적 1,497.35㎡	노인종합복지관 본관 위탁 時 분관 포함
신대노인복지관(분관)	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로 22번길 5(신대동)	대지면적 1,201㎡ 연 면 적 627.67㎡	
북부노인복지관(분관)	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68번길6(덕암동)	대지면적 1,525㎡ 연 면 적 580.58㎡	

2. 재정지원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보조금 지원
- 보건복지부 지침 노인복지관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

3. 위탁운영 기간 : 2019. 01. 01. ~ 2023. 12. 31.(5년)

4. 신청자격

-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법인

-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성, 책임성, 공신력과 재정 능력이 있어 노인복지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법인
 - 법인 정관상 노인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노인복지사업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 -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위·수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 -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· 운영비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는 법인
⇒ 수탁확정 후 공증서 및 이행보험증권 제출
 - 제외대상
 -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
 -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
 -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
- ※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,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.

5. 시설장 자격

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(별표)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자격 기준(사회복지사 2급 이상)에 해당되며, 만65세 이하인 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제2항, 동법 제7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

6. 고용승계

- 새로이 수탁 받는 법인에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.

7. 위탁운영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- 공고기간 : 2018. 10. 04. ~ 2018. 10. 24.(21일간)
 - 접 수 : 2018. 10. 23. ~ 2018. 10. 24.(2일간) 09:00 ~ 18:00
 - 접수장소 : 대덕구 사회복지과(☎ 042-608-6771)
 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접수(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)
- ※ 신청서 접수는 공무원 근무시간(09:00 ~18:00)에 한함.

○ 신청서류(11부)

가. 신청공문서식(서식 별첨)

나. 수탁운영 신청서 (소정양식)

다. 각서(서식 별첨)

라.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(내정자) 이력서·자격증·경력증명서 및 자기소개서

마.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

- 법인 등기부등본(최근 1개월 이내), 법인인감증명, 법인정관,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, 위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승인서, 임원현황, 이사회회의록(수탁운영신청 결의 내용)
-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**【재산목록(기본재산 대비 부채비율 기재 함께 제출), 부동산등기부등본, 잔고증명 등 증빙서류 첨부】**

바. 법인의 최근 5년간 실적

사.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서(2019. 1월 ~ 2023년 12월, 분량 제한 없음) 및 운영계획 요약서

아.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수송계획서

자. 기타 수탁자 선정심의에 도움이 되는 서류

※ 제출서류는 나 ~ 자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1부 제출

8. 선정방법 및 심의발표

○ 선정방법 :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

○ 신청자(법인)는 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 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,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

- 설명은 법인대표 또는 관장예정자로 하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.
(사전 발표요지 준비 및 프리젠테이션 USB 전산파일 첨부)

- 심의위원의 「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」 한 평균 70점 이상 점수를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이 협약 대상 1순위이며, 결렬시

차순위자와 협약 체결

- 신청접수 결과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의를 실시하며, 심의결과 「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」한 평균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재공고

○ 심의항목

- 수탁자의 공신력, 재정능력
- 사업수행 능력 등

○ 수탁법인의 적격성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 위탁운영법인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 결정 후 수탁운영자 개별 통지

9. 기타 및 유의사항

○ 수탁자 선정에 따른 심의일정 개별 통보

※ 불참 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
○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·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

○ 신청접수 현황은 비공개함

○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대덕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

-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결정에 따름

○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대덕구와 위·수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함

※ 지정된 기일까지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위탁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

○ 노인복지법 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·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사회복지과 **☎ 042) 608-6771** 노인복지 담당 문의 바람이며, 이견이 있을 시 대덕구의 해석에 따라야 함

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

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,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4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비고
대덕구장애인 종합복지관	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7(연축동)	부지 2,576m ² 연면적 2,175m ²	지하1층, 지상4층

2. 위탁사무

-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
 -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규정한 사무
(장애아동재활지원사업 포함)

3. 위탁기간

- 2019. 1. 1 ~ 2023. 12. 31(5년) / 필요시 계약갱신에 의해 위탁운영

4. 신청자격

- 사회복지사업 제2조의 “사회복지사업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법인
-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는 법인
⇒ 수탁확정 후 공증서 및 이행보증증권 제출

※ 제외대상

-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
-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
-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
⇒ 수탁자 선정 후 발견시,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.

5. 위탁조건

- 위탁의 범위 : 복지관의 시설, 장비, 부대시설 등 유지·관리 및 운영
- 종사자 고용승계 : 신규 수탁법인은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 승계
- 규정 준수 : 사회복지사업법, 장애인복지법, 위탁 협약서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
- 회계기준 :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준수
- 사업내용 :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업
- 장애인복지관 시설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

6.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

- 선정방법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
- 신청자(법인)는 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

설명하여야 하며,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

- 신청접수 순으로 설명 10분,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, 설명은 법인대표 또는 복지관장 예정자로 하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

(사전 발표 요지 준비 및 프리젠테이션 USB 전산파일 제출)

- 심사위원의 「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」 한 평균 70%이상 점수를 얻은 법인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이 협약 대상 1순위이며,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
- 동점의 경우 다음순에 의거 선정

① 법인전입금 제시금액이 높은 법인 ⇒ ② 공신력부문 높은점수 ⇒

③ 사업수행능력(운영계획 포함)부문 높은점수 ⇒ ④ 재정능력부문 높은점수

- 1개법인 단독 신청시에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의를 실시하며, 심의 결과 「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」 한 평균 점수 70%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재공고

- 수탁법인의 적격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위탁운영법인 선정 기준에 의거 심사 결정 후 수탁운영자 공개발표 및 홈페이지 공고

○ 심의항목 : 수탁자의 공신력, 재정능려력, 사업수행 능력 등

○ 수탁법인의 적격성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 위탁운영법인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결정 후 수탁운영자 개별통지

7.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

○ 공고기간 : 2018. 10. 04 ~ 10. 24(21일간)

○ 접수기간 : 2018. 10. 23(화) ~10.24(수)(2일간) 09:00 ~ 18:00

○ 접수장소 : 대덕구청 사회복지과

○ 접수방법 :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제출

○ 제출서류

가. 수탁운영신청서 (소정양식)

나.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

- 법인등기부등본(최근 1개월이내), 법인인감증명, 법인정관, 법인설립허가증, 사업자등록증, 이사회 회의록(의결내용), 법인재정부담약정서, 각서, 법인대표 이력서,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
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(재산목록, 잔고증명 등)

다. 법인의 최근 5년간 운영실적('14~'18)

라.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 (2019년 ~2023년)

마. 관장 예정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

- 이력서, 자격증,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

바. 현재 보유중인 전체 자원봉사자(후원회 등) 현황 및 향후 추가 확보계획

아. 각서(소정양식)

사. 기타 수탁자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

※ 제출서류는 가~사 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3부 제출하고 요약본 별도 13부제출.

8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 불가합니다.
- 위탁관련 사전설명회는 없으며,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, 협약서, 관계법규 및 위탁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, 미숙지 또는 미확인 및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-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대덕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.
-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결정에 따릅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.
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일정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.
-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지정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위탁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지정일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선정을 무효로 하며, 차순위자와 협약을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사회복지과 (☎ 042-608-6803)로 문의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대덕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.